

공 보

제667호 2018. 10. 17.(수)

선 결	기관 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8-121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거창군 거창읍 고시 제201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거창위천)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8-1229호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6
 거창군 공고 제2018-1231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알림 24
 거창군 공고 제2018-1235호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거창군 공고 제2018-1239호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공고 36
 거창군 공고 제2018-1250 『한들교 접속도로(중로1-11호선)』 보상계획 열람 공고 39
 거창군 공고 제2018-1251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47

의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1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0길 2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836-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1길 291	2009-04-01	2018-10-17	마을 곁에 있는 아홉골에 연유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616-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293-16	2009-12-28	2018-10-17	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짝을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2-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10길 29	2016-04-20	2018-10-17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거창군 거창읍 고시 제2018 - 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거 창 읍 장

하천의 명칭 (하천등급)	거창위천 (지방하천)		
점용자의 성명	대한산양산삼유통공사 영농조합법인 대표 서재석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68-8
점용의 목적 및 개요	2018거창산양산삼축제 개최에 따른 하천부지 사용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50-5번지 등 2필지 / A=4,000m ²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8년 10월 12일 ~ 10월 14일 (3일간)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2. 개정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공원,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별표10의 이용료가 감면되는 ‘국공립체육시설’에 포함되는 수승대 눈썰매장과 현재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이 없는 거창군 수승대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 이용료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 제3항, 4항)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나.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일부 개정(별표 1, 2)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규정 신설
- ‘예약 결제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규정 신설

4. 예고기간 : 2018. 10. 12. ~ 11. 02.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문화관광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2, 문화관광과(수승대담당)

- 전화번호 : 055) 940-8530

- FAX : 055) 940-854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안

의안 번호	2018 ~
----------	--------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개정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공원,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 제3항, 제4항 신설)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별표 1」 시설이용료

- ‘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 규정 신설

○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일부 개정

- ‘ 예약 결제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 규정 신설

구 분	반 환 기 준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결제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신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때	반환하지 않음

3. 참고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관광진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 기타 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규제심사
 - 복지정책과(여성아동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

「별표 1」 시설이용료

가. 주차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30분 이내	10분 초과당	1일 주차	비고
소형차	500	200	5,000	
대형차	1,000	400	10,000	

※ 소형차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대형차 : 승합차(버스), 화물차(트럭)

- 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비고
변경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다. 썰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개인	5,000	6,000	7,000
단체	4,000	5,000	6,000

라. 축제극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이용료
오전	09:00 ~ 12:00	50,000
오후	14:00 ~ 17:00	50,000

<신 설>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u><신 설> 결제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u>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때	반환하지 않음

- 반환기준 시간은 18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 2018.3.1.] [법률 제15058호, 2017.11.28., 일부개정]

-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51호, 2018.4.30., 일부개정]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9.8.13.]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6.22.>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12.30.]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10.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185호, 2017.12.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02호, 2017.3.2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5.12.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시행 2018.6.13.] [법률 제15212호, 2017.12.1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100-6342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 2018.7.17.] 제1조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2016.12.20.>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2018.1.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2016.12.20.>

[시행일 : 2018.7.17.] 제2조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4.12.]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8.1.16.>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8.1.16.>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4.12.]

[시행일 : 2018.7.17.] 제3조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 2018.5.1.] [법률 제15028호, 2017.10.31.,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전문개정 2011.9.15.]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

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2016.5.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제목개정 2008.3.28., 2011.9.15.]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1.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11. ~ 2018. 10. 28.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54호)	발전소명	현대3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김 진 주	정 대 석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마리면 고창길 3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촌1길 125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산135-1 (토지위)	
	설비용량	99.4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2. 27.	
	양수(예정)일	2018. 10. 11.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2. 일부개정이유

인구증가대책 추진 강화를 위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규정된 출산장려와 대학생 전입 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 : 안 제5조제6호

둘째아이 이상 50만원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안 제20조제1항제9호

학기별 30만원, 재학 중 최대 4번 /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5. ~ 2018. 11. 5. /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55-940-3034
- 팩 스 : 055-940-302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940-3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	-------

제출연월일	2018. 10.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우리 군 인구증가대책 추진 강화를 위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규정된 출산장려와 대학생 전입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함 : 안 제5조제6호

둘째아이 이상 50만원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 안 제20조제1항제9호

학기별 30만원, 재학 중 최대 4번 /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75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5. ~ 2018. 11. 5. / 20일간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자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둘째아이 이상 5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6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 동안 지급(최초 영유아양육비 지급하는 달에 소급 분을 함께 지원) 다만, 전입 시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 동안 지급. 다만, 전입 시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가. 학기별 30만원

나. 재학 중 최대 4번(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6호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양육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2019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u>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사람</u>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2.~11. (생략)</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임신 축하 기념품 : 10만원 이내</p> <p>2. 임신부 영양제 : 7개월분(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p> <p>3. 엽산제 : 임신시까지</p> <p>4. (삭제 2009.6.10)</p> <p>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 2회</p> <p>6. 출산장려금 : <u>둘째아이 이상 50만원</u>(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p> <p>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250만원 이내</p>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u>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u>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p> <p>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p> <p>1. 둘째아이 : <u>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까지</u> 지급한다.</p> <p>2. 셋째아이 이상 : <u>신청일이 속하는</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u>자녀를 출산한 사람</u>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2.~11.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예산 범위에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임신 축하 기념품 : 10만원 이내</p> <p>2. 임신부 영양제 : 7개월분(임신 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p> <p>3. 엽산제 : 임신시까지</p> <p>4. (삭제 2009.6.10)</p> <p>5.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 2회</p> <p>6. 출산장려금 : <u>50만원</u>(다만,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p> <p>7.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250만원 이내</p>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u>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6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u>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p> <p>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p> <p>1. 둘째아이 : <u>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 동안 지급(최초 영유아양육비 지급하는 달에 소급 분을 함께 지원) 다만, 전입 시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u> 지급</p> <p>2. 셋째아이 이상 : <u>출생일이 속하는</u></p>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달부터 60개월 동안 지급. 다만, 전입 시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신설>

9.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

가. 학기별 30만원

나. 재학 중 최대 4번(학자금과 중복 지원 불가)

9.~11. (생략)

10.~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제10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 자 치 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 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 10. 15. ~ 2018. 10. 29.(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 055-940-332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지적확정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018년 10월 15일

거 창 군 수

창선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내역

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토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반송사유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한 면적(m ²)	감소한 면적(m ²)	주소	성명	
1	경남 거창	북상	창선	292	묘지	149	292	묘지	149.0	0.0			오*영	주소불명 미등기
2	경남 거창	북상	창선	295-2	도로	50	295-2	도로	50.0	0.0			조*하	주소불명 미등기
3	경남 거창	북상	창선	299-1	도로	46	299-1	도로	46.0	0.0			김*제	주소불명 미등기
4	경남 거창	북상	창선	314-2	도로	76	314-2	도로	76.0	0.0			정*영	주소불명 미등기
5	경남 거창	북상	창선	318-1	도로	46	318-1	도로	46.0	0.0			신*환	주소불명 미등기
6	경남 거창	북상	창선	355	묘지	245	355	묘지	245.0	0.0			정*년	주소불명 미등기
7	경남 거창	북상	창선	417	하천	198	417	하천	198.0	0.0			박*환	주소불명 미등기
8				451	전	221	451	전	221.0	0.0				주소불명 미등기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 시	종전 토지					확정예정 토지					증감 면적 (㎡)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의견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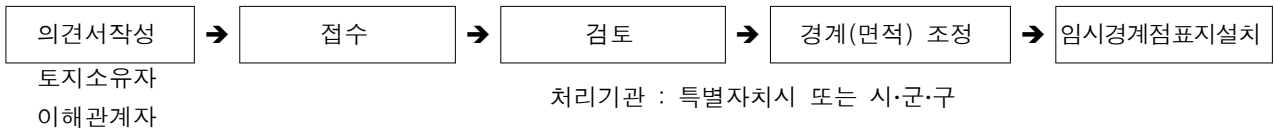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한들교 접속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6.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한들교 접속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370.0m, B=20.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 - 3592,3595)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

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거창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

6.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m ²)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544	1,505					
1	거창읍 대평리	441-119	전	20	20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대평**회			
2	"	441-10	임	53	53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중동**회			
3	"	441-58 (441-155)	대	527	22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신*범			
4	"	440-44 (분할예정)	전	6,288	97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	거창***조 합			
5	"	440-42	대	130	13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최*식			
6	"	441-46 (441-151)	전	526	1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동	김*중 외 8명			

○ 보상조서 (지장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		수량 및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품명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거창읍 대평리	441-58	상가(점포)	경량철골조	147.9	m ²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신*범			
2	"	441-58	상가(현관 등)	경량철골조	9.9	m ²					
3	"	441-58	실내뉘시터	경량철골조, 지하수조	156.9	m ²					
4	"	441-58	실외데크	-	30.0	m ²					
5	"	441-58	실외조명	7조	1.0	식					
6	"	441-58	지하수	암반관정	1.0	식					
7	"	441-58	쇄석	-	1.0	식					
8	"	441-58	화단	조경석, 소경목포함	1.0	식					
9	"	441-58	화단	블록콘크리트	1.0	식					
10	"	441-58	소나무	10년	2.0	주					
11	"	441-58	향나무	5년	3.0	주					
12	"	441-58	주목	10년	14.0	주					
13	"	441-58	라일락	10년	7.0	주					
14	"	441-58	남천	5년	13.0	주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장물		수량 및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품명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5	“	441-58	연산홍	3년	10.0	주					
16	“	441-58	회양목	5년	7.0	주					
17	“	441-58	산수유	10년	1.0	주					
18	“	441-58	앵두나 무	20년	1.0	주					
19	“	441-58	영업권	코아루갈비(31 5-07-28030)	1.0	식					
20	“	441-58	영업 시설	식기세척기등	1.0	식					
21	“	441-58	간판	-	2.0	식					
22	“	440-44	창고 및 화장실	조적조슬라브	10.5	m ²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조 합			
23	“	440-44	마당	블럭조(80m*2 m)	160.0	m ²					
24	“	440-42	주택	슬라브(2.1*5.6)+(6.7*8.7)	70.1	m ²	경남 거창군 남상면	최*식			
25	“	440-42	창고 (옥실)	블록슬라브(3. 3*2.5)	8.3	m ²					
26	“	440-42	주택(다용도 실)	샌드위치판 넬(3.8*3.5)	13.3	m ²					

○ 보상조서 (지장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		수량 및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품명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7	거창읍 대평리	440-42	담장	블록 (18.2*1.6)	29.1	m ²	경남 거창군 남상면	최*식			
28	"	440-42	대문	철재 (2.0*1.5)	1.0	식					
29	"	440-42	계단	-	10.0	m ²					
30	"	440-42	수도	-	1.0	식					
31	"	440-42	가추 (창고)	스레트	8.7	m ²					
32	"	440-42	가추	스레트	11.0	m ²					
33	"	440-42	가추	스레트	8.7	m ²					
34	"	440-42	바닥	-	24.0	m ²					
35	"	441-38	대추 나무	15년	4.0	주		최*문			
36	"	441-38	가죽 나무	10년	1.0	주		최*문			
37	"	441-38	감나무	15년	1.0	주		최*문			
38	"	441-36	대추 나무	15년	1.0	주		홍*식			
39	"	441-36	오가피	12년	7.0	주		홍*식			
40	"	441-36	가죽 나무	12년	4.0	주		홍*식			
41	"	441-43	대추 나무	15년	1.0	주		이*자			
42	"	440-11	가죽 나무	20년	2.0	주		박*순			
43	"	440-11	감나무	12년	1.0	주		박*순			
44	"	440-11	대추 나무	20년	1.0	주		김*순			
45	"	440-11	두릅 나무	-	60.0	m ²		김*순			
46	"	440-11	제피 나무	20년	1.0	주		한*선 (박*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장물		수량 및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품명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47	“	440-11	가죽 나무	15년	1.0	주		한*선 (박*구)			
48	“	440-11	골담초	15년	1.0	주		한*선 (박*구)			
49	“	440-11	연산홍	7년	1.0	주		한*선 (박*구)			
50	“	440-11	오가피	15년	1.0	주		안*임			
51	“	440-11	대추 나무	15~20년	2.0	주		안*임			
52	“	440-11	엄나무	18년	1.0	주		안*임			

<붙임 : 의견서 >

『한들교 접속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2018. 10.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에 의거「둔기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 10. 17. ~ 2018. 10. 3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7.

거 창 군 수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